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내과분과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내과분과전문의”라 함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은 해당 분과의 내과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분과)

대한내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내과분과 전문 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1. 소화기내과 분과
2. 순환기내과 분과
3. 호흡기내과 분과
4.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5. 신장내과 분과
6. 혈액종양내과 분과
7. 감염내과 분과

8. 알레르기내과 분과
9. 관절류마티스내과 분과

제 5 조 (조직)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전문의 관리이사가 되고 9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
   2) 위원 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내과분과위원회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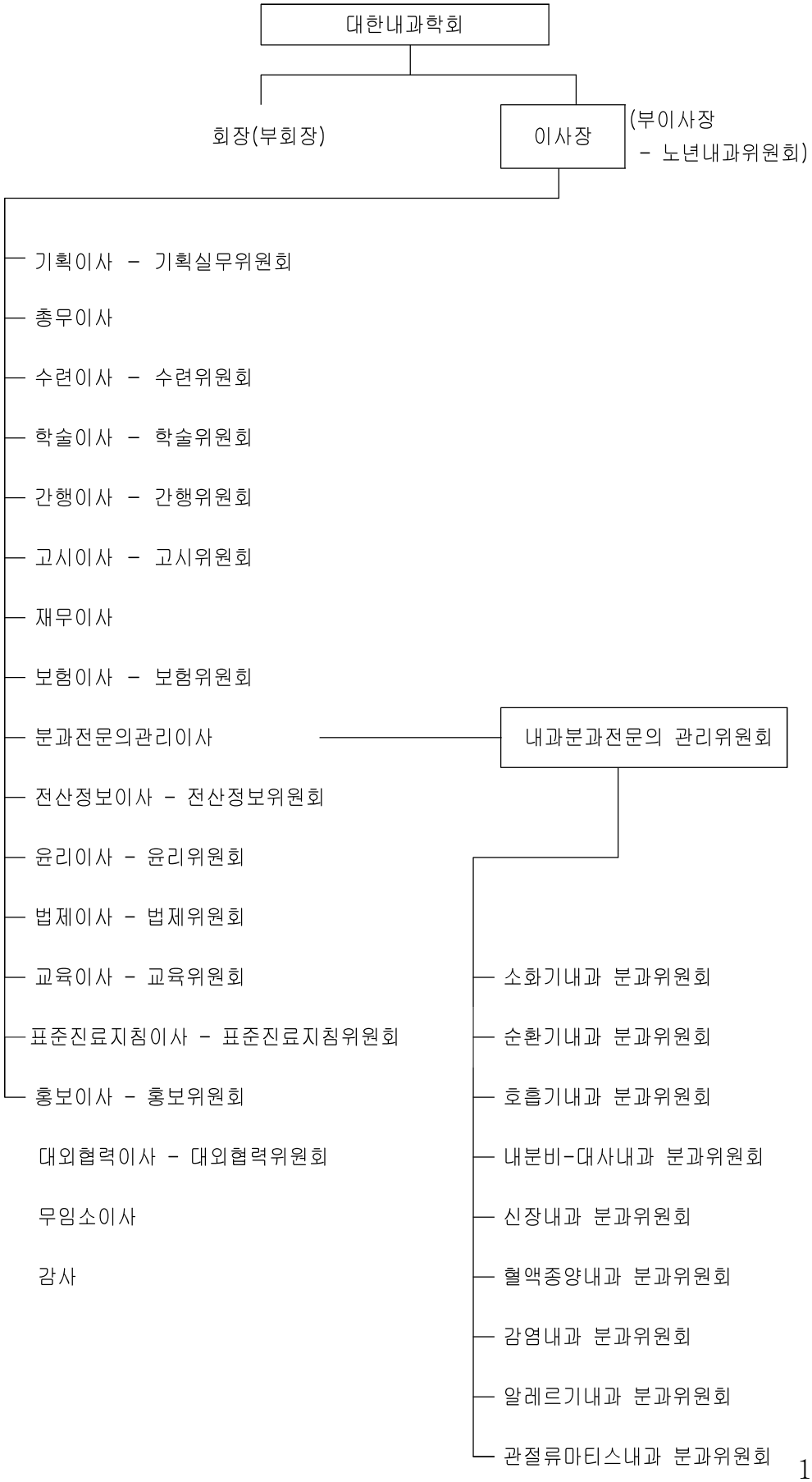
대한내과학회
회장(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 노년내과위원회)
기획이사 - 기획실무위원회
총무이사
수련이사 - 수련위원회
학술이사 - 학술위원회
간행이사 - 간행위원회
고시이사 - 고시위원회
재무이사
보험이사 - 보험위원회
분과전문의관리이사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전산정보이사 - 전산정보위원회
윤리이사 - 윤리위원회
법제이사 - 법제위원회
교육이사 - 교육위원회
표준진료지침이사 - 표준진료지침위원회
홍보이사 -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이사 - 대외협력위원회
무임소이사
감사
소화기내과 분과위원회
순환기내과 분과위원회
호흡기내과 분과위원회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위원회
신장내과 분과위원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위원회
감염내과 분과위원회
알레르기내과 분과위원회
관절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

제 6 조 (수련)

1.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련교육 목적으로 전임의를 파견할 경우 기간과 수련장소를 명기하여 사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임의 파견 대상 병원이 해당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 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내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2)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와 갱신료를 징수한다. 인정료와 갱신료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인정을 무

효로 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갖는 자

2) 대한내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상기 제 1,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4) 기타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제3항의 정규수련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개정된 제5조 1항의 1), 2항의 2)와 3), 그리고 기구표는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
5.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6.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었다.
7. 본 규정은 2007년 10 월 2일 개정되었다.

8. 본 규정은 2010년 3 월 10일 개정되었다.
9. 본 규정은 2010년 7 월 13일 개정되었다.